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청주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주대학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주관하여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주요대학 46개 대학교 114팀과 심사위원, 운영요원 및 참관자 등 500여명이 참가한다.

첫째 날에는 ‘선거권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둘째 날에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4개 팀을 선정하게 된다.

최종 4팀을 대상으로 8월 22일(토) JTBC 스튜디오에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통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며, 그 내용은 8월30일(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최종 우승팀(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2005년 처음 개최되어 금년까지 11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토론대회 분야 국가기관 최초로 ‘최단기간 최다토론’ 기록 인증을 한국기록원을 통해 도전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대회가 성숙한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개요 1부.
2. 역대 대회 참가인원 및 논제 1부.

[붙임 1]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예선(리그)		8. 12.(수) 10:00~18:30	청주대학교 (청주시 소재)	
8강까지		8. 13.(목) 09:30~16:00		
본선	준결승	녹화 8. 22(토) 14:00~16:00	JTBC 방송사	
	결승	방영 8. 30(일) 08:30~10:00		

□ 참가 인원

- 참가팀수 : 114팀
- 참가인원 : 228명
- 참가대학수 : 46개 대학

□ 토론 논제

구분		토론 논제	비고
예선		선거권 연령, 만18세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본선	8강까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TV 방송
	준결승		
	결승		

□ 시상 내역

상 장 명	수상내역	수상수	부 상	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대 상	1팀	상장, 장학금(5백만원)	
	금 상	1팀	상장, 장학금(3백만원)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위원장상	은 상	2팀	상장, 장학금(팀당 1백50만원)	
	동 상	4팀	상장, 장학금(팀당 5십만원)	
	장려상	8팀	상장, 장학금(팀당 2십만원)	
청주대학교 총장상	후원사 특별상	7팀	상장, 부상	
선거연수원장상				
충청북도선관위원장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				
한국리서치 사장상				
CJB청주방송 사장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상	스피커상	8명	상장	

역대 대회 참가인원 및 논제

□ 대회 참가 인원

대회	참가팀수	대회	참가팀수
제10회	128팀(43개 대학)	제5회	94팀 (17개 대학)
제9회	111팀(42개 대학)	제4회	72팀 (25개 대학)
제8회	143팀 (47개 대학)	제3회	58팀 (22개 대학)
제7회	149팀 (45개 대학)	제2회	100팀 (30개 대학)
제6회	128팀 (46개 대학)	제1회	104팀 (28개 대학)

□ 논제

대회	토 론 논 제
제10회	○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제9회	○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8회	○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7회	○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6회	○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제5회	○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회	○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3회	○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제2회	○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1회	○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 하여야 한다.